



제 433회 국회 (임시회)
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관계 행정기관 명시 및
특별위원 수 확대 〉

■ 구자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012호)

2026. 3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전문위원 한석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관계 행정기관 명시 및 특별위원 수 확대	2

I. 제안경위

2025년 11월 7일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.

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재정경제부,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부, 중소벤처기업부를 명시하고 현행 3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(안 제16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관계 행정기관 명시 및 특별위원 수 확대 (안 제16조제1항)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예시로 ‘재정경제부, 산업통상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’을 법률에 명시하고, 특별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임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특별위원)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.	제16조(특별위원) ① -----재정경제부, 산업통상부,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현행법 제16조제1항은 최저임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에는 관

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, 법 시행령 제15조는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여, 구체적인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.

[최저임금위 특별위원 관련 규정]

「최저임금법」 제16조(특별위원)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.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15조(특별위원의 위촉 등)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<u>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한다.</u>
--

2026년에는 고용노동부, 재정경제부,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각 1명이 특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.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, 특별위원 수 상한을 5인으로 하면서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최저임금의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, 특별위원 수의 확대를 통해 위원회 참여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를 넓혀 다양

한 분야에서의 정부 부처의 입장을 심의과정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안 제16조제1항은 예시규정으로 개정안과 같이 특정 부처를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기속받지 않고 필요한 관계부처 중 5명 이내의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.

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으로 특별위원 수를 확대하되,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에 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40